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목적 및 경위

1. 개정 목적 및 경위

현재 감사원 위원(이하 위원)은 총 2인으로 감사원을 구성하고 운영하기에는 부족함. 2023년도 상반기 위원 모집에서도 모집 인원이 4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만 지원해 미달이 되는 등 위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위원의 수가 감사시행세칙 제10조에 규정된 위원의 수보다 적어 원활한 정기회계감사시행이 어려울 경우에 정기회계감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임시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지만 이에 대한 회칙상의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임시위원의 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사시행세칙에 임시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정의)</p> <p>본 세칙에서 "피감기관"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2.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3. 전문기구: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4. 특별기구 5.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6. 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p>제4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세칙에서 "피감기관"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2.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3. 전문기구: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4. 특별기구 5.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6. 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2. <u>본 세칙에서 "회계 담당자"란 피감기관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u> 3. <u>본 세칙에서 "회계 책임자"란 회계 담당자 중에서 제22조제3항의 회계자료</u>

	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목적 및 경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회계담당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정의를 추가하였고, 공금관리자와 회계서류 제출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계서류 제출자를 해당 피감기관의 회계서류 총책임자라는 의미의 회계 책임자라고 구별하는 조항을 만들었음. 이에 따라 제정운용세칙 제17조2항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의미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신 설>	제10조의2(임시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수가 4인 미만 이어서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u> 2. <u>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 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u> 3. <u>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대회까지로 한다.</u> 4. <u>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따른다.</u>
목적 및 경위	지원자 미달, 결원 등으로 인해 위원의 수가 감사시행세칙 제10조에 규정된 위원의 수 보다 적어 원활한 정기회계감사시행이 어려울 경우에 정기회계감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임시위원을 모집하고 인준하고자 하지 이에 대한 회칙상의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임시위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사시행세칙에 임시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제10조의2를 신설함.

제14조(검직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u>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u> 검직할 수 없다. 단, <u>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 대표자회의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u> 대의원은 예외로 둔다.	제14조(검직 금지) 감사위원은 <u>임기 중 피감기관의 장을</u> 검직할 수 없다. <단서 삭제>
목적 및 경위	피감기관의 회계와 관련 없는 위원, 국원 또는 집행부원까지 감사원 위원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았음. 검직금지 조항 또한 감사원 위원 부족 문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14조에 의한 제한을 최대한 완

	화하고자 함.
--	---------